

제303회 임시회  
2011. 9. 20.(화)

「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의회 운영 위원회 전문위원

# 「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출자 : 이광희 의원외 6인

(이광희, 김도경, 노광기, 김양희, 박문희, 정 현, 장병학)

## 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1년 9월 9일
- 회부일자 : 2011년 9월 15일

## 3. 제안이유

- 효과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제2차 정례회기 중 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,
- 「지방자치법」 일부개정(2011. 7. 14.)에 따른 행정사무감사기간 연장(10일→14일)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회의일수 개정이 필요함.

## 4. 주요내용

-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30일 이내로 함.  
(안 제2조)
  - 120일 이내 ⇒ 130일 이내
-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회의일수는 60일 이내로 함.  
(안 제2조)
  - 50일 이내 ⇒ 60일 이내

## 5. 검토의견

- 그 간,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모두 수행하기에는 기간이 충분하지 못하여 내실 있는 심사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바,
-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례회 기간 및 총 회의일수 기간을 연장한 「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일부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,
- 「지방자치법」 일부개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기간 연장을 반영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개정이라 사료됨.

붙임 : 「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120일”을 “130일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50일”을 “60일”로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연간 회의 총 일수) 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<u>120일</u> 이내로 한다.</p>	<p>제2조(연간 회의 총 일수) ----- ----- -----<u>130일</u>-----</p>
<p>제3조(회기)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회하고 회의일수는 <u>50일</u> 이내로 하며,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.</p>	<p>제3조(회기) ----- -----<u>60일</u>----- -----</p>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47조(개회·휴회·폐회와 회의일수) ① 지방의회의 개회·휴회·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.

②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# □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

제2조(연간 회의 총 일수) 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회의 의결로 20일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.

제3조(회기)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회의일수는 50일 이내로 하며,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.